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31

발의연월일 : 2025. 8. 7.

발 의 자 : 추경호・김기현・정동만
권성동・이헌승・김상훈
최수진・윤영석・배준영
성일종・권영진・김기웅
박수민・최은석・박성훈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자금 조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로 인한 주권 또는 지분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1호).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것에만 제1항을 적용한다. 1.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4, 제2호의5, 제3호 및 제4호: 2025년 12월 31일 2. (생 략) ③·④ (생 략)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1. ----------2028년 12월 31일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